

『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7년 12월 7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7년 12월 7일

라. 상정일자 : 2007년 12월 21일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김 자 원

나.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사기진작 및 예우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주차요금 면제대상자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에 까지 확대 적용(안 제4조의2)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

라. 참고사항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나 명 철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참전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를 추가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안으로서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자에 대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하는 법률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